

---

## Policy and Law Report \_Vol.9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7.30 ~ 8.8) -

August 9,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산업통상 자원부</p>	<p>• 「<b>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b>」 발표</p> <p>산업통상자원부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함</p> <div data-bbox="319 616 1316 952"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b>기술규제 혁신방안</b></p> <p>The diagram illustrates the 'Technical Regulation Innovation Plan' process. It starts with 'Domestic Conditions' (including regulatory burden reduction and after-sales management) and 'Foreign Conditions' (including trade agreement improvement and strengthening of domestic industry competitiveness). These lead to 'On-site checks of domestic regulations' and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central goal is 'Innovation and Improv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Technical Regulations'. This process results in 'Expected Effects': 'Reduction of Business Costs' (23 billion 8,500 million KRW), 'Contribution to Export Expansion' (23 billion 9,000 million KRW), and 'Job Creation Effect' (23 billion 8,200 million KRW).</p> </div>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1개 법정인증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심층 심사·정비             <div data-bbox="363 1108 1289 1294"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padding: 2px;">20년 이상된 법정인증(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부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등 17개</li> <li>• 국토부 : 택시미터기검정, 내화구조인정,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등 11개</li> <li>• 해수부 :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8개</li> </ul> </div> </li> <li>KS(121종), KC(194종)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규제를 2023년까지 정비 추진             <div data-bbox="363 1384 1289 1590"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 padding: 2px;">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기술기준을 개정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어컨, 냉방기 등의 냉매로 사용 중인 HFC(수소불화탄소)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대체 냉매인 A2L 개발로, '18년 국제표준 IEC 60335-2-40이 개정됨</li> <li>• 국내에 A2L 생산업체(3개)가 있으나, 관련 국내 기준이 없어 판로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제 표준을 반영한 KC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국내 판매(시장규모 : 2천억원) 및 수입대체 가능</li> </ul> </div> </li> <li>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의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 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li> <li>**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li> </ul> </li> </ol>	<p>2021-08-05</p>

부처	내용	일시				
중소벤처 기업부	<p>• <b>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b></p> <p>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함. 이번 대책은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제2벤처붐을 지속하면서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됨</p> <p>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①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②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③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에서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함</p>	2021-08-03				
	<p>&lt;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85%;">과 제 내 용(안)</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산업 촉진 제도 개선 (4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이미지 → 글자 파일형태)</li> <li>②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 → 10년)</li> <li>③ 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 (창업사업 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li> <li>④ 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 검토</li> </ul> </td> </tr> </tbody> </table>		구 분	과 제 내 용(안)	신산업 촉진 제도 개선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이미지 → 글자 파일형태)</li> <li>②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 → 10년)</li> <li>③ 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 (창업사업 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li> <li>④ 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 검토</li> </ul>
	구 분		과 제 내 용(안)			
신산업 촉진 제도 개선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률서비스 기업을 위한 판결문 제공방법 개선 (이미지 → 글자 파일형태)</li> <li>②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 확대(업력 7년 → 10년)</li> <li>③ 데이터 기반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완화 (창업사업 보조금 데이터 구입비 허용 등)</li> <li>④ 민간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항목 추가방식 개선 검토</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제조창업 규제완화 (4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li> <li>②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li> <li>③ 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제품 확인 시 직접생산으로 인정</li> <li>④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으로 인정</li> </ul> </td> </tr>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창업기업 행정부담 경감 (4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 (방문신청 → 우편·택배 등 추가)</li> <li>②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출력이 가능토록 조치 (방문 수령 → 온라인 발급 추가)</li> <li>③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1년 → 3년)</li> <li>④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 → 전자문서 추가)</li> </ul> </td> </tr> </tbody> </table>	제조창업 규제완화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li> <li>②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li> <li>③ 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제품 확인 시 직접생산으로 인정</li> <li>④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으로 인정</li> </ul>	창업기업 행정부담 경감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 (방문신청 → 우편·택배 등 추가)</li> <li>②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출력이 가능토록 조치 (방문 수령 → 온라인 발급 추가)</li> <li>③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1년 → 3년)</li> <li>④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 → 전자문서 추가)</li> </ul>		
제조창업 규제완화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효·숙성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 완화</li> <li>② 시제품 유무에 따라 의료기기의 온라인 펀딩 광고사전심의 규정 명확화</li> <li>③ 전대차(재임대)한 공장의 생산도 제조물품 등록 및 중기간 경쟁제품 확인 시 직접생산으로 인정</li> <li>④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위탁생산을 공공조달 참여시 직접생산으로 인정</li> </ul>					
창업기업 행정부담 경감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인위치정보 활용 사업자의 허가신청 방법 확대 (방문신청 → 우편·택배 등 추가)</li> <li>② 통신판매업 신고증, 「정부24」에서 발급·출력이 가능토록 조치 (방문 수령 → 온라인 발급 추가)</li> <li>③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확대(1년 → 3년)</li> <li>④ 콘크리트 KS인증 납품서 제출방법 개선(인쇄물 → 전자문서 추가)</li> </ul>					

부처	내용	일시
중소벤처 기업부	<p>• <b>「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 수립</b></p> <p>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함</p> <p>주요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로는</p> <p>① <b>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창업에 대해 중기부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지원(현재 약 20%수준)</li> <li>• 창업사업화 지원업력 기준을 현행 7년→10년으로 확대 계획(창업지원법 개정 추진)</li> <li>•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li> <li>• ‘이어드림 프로젝트’ 등 스타트업을 위한 개발인력을 신규 공급하고,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 및 청년창업 전용펀드 역시 약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 예정</li> </ul> <p>② <b>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분야 (1탄),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2탄), BIG 분야(3탄) 등 3개 트랙으로 나누어 올해 부터 본격 운영</li> </ul> <p>③ <b>지역 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안정화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li> <li>• 올해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인프라, 청년 정주환경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 (5개 내외)</li> </ul> <p>④ <b>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کم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육성하고, ‘도전! 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를 확대(’21.10개)</li> </ul> <p>⑤ <b>창업정책 총괄 및 효율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창업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li> <li>• ‘K-스타트업’ 시스템을 통한 통합신청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li> <li>•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 마련</li> </ul> <p>⑥ <b>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 등이 있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과 함께,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을 올해 말까지 간소화할 계획</li> <li>• 창업지원사업 신청서류 표준화와 자율성에 기반한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추진</li> </ul>	2021-08-03

부처	내용	일시									
	<p style="text-align: center;">&lt; 목표 및 기대효과 &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728f; color: white;">현재</th> <th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th> <th style="background-color: #800040; color: white;">미래('21~'23)</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22.9만개</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20%</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9위</li> <li>▶ 창업생존률(5년) : 31.2%</li> </ul> </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b>28만개</b></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b>40%</b></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b>4위</b></li> <li>▶ 창업생존률(5년) : <b>40%</b></li> </ul> </td> </tr> </tbody> </table>	현재	⇒	미래('2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22.9만개</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20%</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9위</li> <li>▶ 창업생존률(5년) : 31.2%</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b>28만개</b></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b>40%</b></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b>4위</b></li> <li>▶ 창업생존률(5년) : <b>40%</b></li> </ul>				
현재	⇒	미래('2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22.9만개</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20%</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9위</li> <li>▶ 창업생존률(5년) : 31.2%</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창업기업 : 연간 <b>28만개</b></li> <li>▶ 신산업 창업지원 : 예산의 <b>40%</b></li> <li>▶ 기업가정신순위 : 세계 <b>4위</b></li> <li>▶ 창업생존률(5년) : <b>40%</b></li> </ul>									
중소벤처기업부	<p>• <b>‘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b></p> <p>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협력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혁신성장 지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구 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자상한 기업 1.0</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9c4;">자상한 기업 2.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선정분야</td> <td>무작위 선정</td> <td>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중점분야 선정</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협업체계</td> <td>개별 협약 내 상생협력</td> <td>협업으로 자상한기업 · 협단체 · 정부간 입체적 연결</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제고, 산업구조 재편 민관협력 추진,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개방형 상생협력 확대</li> </ul> <p>② <b>상생협력의 온기 확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결제 확산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과, 내일채움공제 · 근로복지기금 확대 및 임금 격차 해소 민간 협약 확대</li> <li>• 국내외 판로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수출 물류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li> <li>* 제품 수(개, 누적) : ('21) 150개 → ('22) 200개 → ('23) 250개</li> </ul> </li> </ul> <p>③ <b>공정한 거래관계 정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 등 분쟁조정실 실효성 제고</li> <li>- 납품대금 조정협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 로도 확대 (상생협력법 개정)</li> </ul>	구 분	자상한 기업 1.0	자상한 기업 2.0	선정분야	무작위 선정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중점분야 선정	협업체계	개별 협약 내 상생협력	협업으로 자상한기업 · 협단체 · 정부간 입체적 연결	2021-08-05
구 분	자상한 기업 1.0	자상한 기업 2.0									
선정분야	무작위 선정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중점분야 선정									
협업체계	개별 협약 내 상생협력	협업으로 자상한기업 · 협단체 · 정부간 입체적 연결									

부처	내용	일시								
	<p>- 조정협외의 신청요건도 완화하여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제고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p> <table border="1" data-bbox="368 383 1310 562"> <thead> <tr> <th data-bbox="368 383 810 439">현 행</th> <th data-bbox="810 383 1310 439">개 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68 439 810 562">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중 1개 이상 지표의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td> <td data-bbox="810 439 1310 562">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증가액의 <b>합산분</b>이 잔여 납품대금의 일정수준(예:3%) 이상</td> </tr> </tbody> </table> <p>•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등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li> <li>-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 (상생협력법 개정)</li> </ul> <p>④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생기금 운영방식 개선, 특전 강화, 민간자율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 (상생협력법 개정)</li> <li>-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li> <li>-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 (기금 운영규정 개정)</li> <li>* (현행) ①기금출연 → ②상생협력 사업 추진 → ③지원금 지급</li> <li>(추가) ①상생협력 사업 추진 → ②기금출연 및 지원금 지급</li> </ul> </li> <li>•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촉진</li> </ul> <table border="1" data-bbox="368 1189 1310 1368"> <tbody> <tr> <td data-bbox="368 1189 536 1279">대기업</td> <td data-bbox="536 1189 1310 1279">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 우대, R&amp;D 지원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td> </tr> <tr> <td data-bbox="368 1279 536 1368">중소기업</td> <td data-bbox="536 1279 1310 1368">대·중소 공동 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참여 우대, 사내벤처 육성사업 선정 우대 등</td> </tr> </tbody> </table>	현 행	개 선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중 1개 이상 지표의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증가액의 <b>합산분</b> 이 잔여 납품대금의 일정수준(예:3%) 이상	대기업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 우대, R&D 지원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중소기업	대·중소 공동 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참여 우대, 사내벤처 육성사업 선정 우대 등	
현 행	개 선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중 1개 이상 지표의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증가액의 <b>합산분</b> 이 잔여 납품대금의 일정수준(예:3%) 이상									
대기업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 우대, R&D 지원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중소기업	대·중소 공동 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참여 우대, 사내벤처 육성사업 선정 우대 등									

##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p>• <b>「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1.8.3. 시행)</b></p> <p>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여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고,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설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의 과태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며, 가스시설시공업의 시공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일반주택 사용규모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의 설치·변경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1-08-03
해양 수산부	<p>• <b>「항만안전특별법」 (2022.8.4. 시행예정)</b></p> <p>최근 항만에서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장비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치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항만 안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임</p> <p>이에 항만운송 참여자(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관리청이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함께 항만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7조)</p> <p>②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제8조)</p> <p>③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제9조제1항)</p>	2021-08-04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④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두고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을 지정·위촉하도록 함 (제9조제5항 및 제6항)</p> <p>⑤ 관리청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시정 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및 제11조) 등이 있음</p>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p>•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p> <p>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임원급)를 기업규모에 따른 임직원으로 세분화하고,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이 개정(법률 제18201호, 2021.6.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업규모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임원급) 기준 구체화 (안 제36조의7제1항 신설)</li> <li>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 제외대상자 명확화 (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li> <li>③ “신고의무 없는 자”의 경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혼란 방지 (안 제36조의7제3항 신설)</li> <li>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기한을 당초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안 제36조의8 개정)</li> <li>⑤ 겸직금지임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 규정 마련 (안 제70조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제2항제8호 개정)</li> <li>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위탁근거 마련 (안 제70조제5항 신설)</li> <li>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 (제74조 별표9) 등이 있음</li> </ul> <p>※ 의견제시기간 :8/3(화)~9/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사이버침해대응과)</a>로 제출</p>	2021-08-03
환경부	<p>• 「<u>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u>」</p> <p>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자구 일부를 수정함</p>	2021-08-0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p> <p>-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질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 신청시 살생물질이 법 12조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p> <p>②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p> <p>-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하기 위함</p> <p>③ 제품 광고시 적법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추가 (규칙 제34조제2항 개정)</p> <p>-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p> <p>④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 (별표3)</p> <p>- 일정기간(3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p> <p>⑤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광고 제한 특례 신설 (환경부령 제901호 부칙 신설)</p> <p>-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함</p> <p>※ 의견제시기간 :8/2(월)~9/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a>로 제출</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의약품 안전처	<p>• <b>「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b></p> <p>식품, 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8365호, 2021. 7. 27)됨.</p> <p>이에 따라 인체적용제품의 추가 지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절차,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위해성평가의 요청 요건 및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체적용제품 추가 지정 (안 제2조)</li> <li>②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안 제3조)</li> <li>③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제10조)</li> <li>④ 위해성평가 결과 등의 공개 범위, 방법·절차 등 마련 (안 제11조) 등이 있음</li> </ul> <p>※ 의견제시기간 :8/4(수)~9/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예방정책과)</a>로 제출</p>	2021-08-04
특허청	<p>• <b>「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b></p> <p>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등 (안 제65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심리위원의 수당과 일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정하고, 여비와 숙박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li> <li>-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며, 심판비용에는 불산입</li> </ul> </li> <li>②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필요한 후보자 명단 관리 (안 제65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2년마다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li> <li>- 후보자 명단의 보안을 위해 새로운 후보자의 추가 가능</li> </ul> </li> </ul>	2021-08-0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③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안 제65조의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장은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li> <li>-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적합한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을 취소</li> </ul> <p>④ 당사자의 의견제출 양식 및 제척·기피신청 양식 (안 제60조, 안 제61조, 별지 제33호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판절차에서 사용하던 기존 의견서 양식과 신청서 양식을 동일하게 사용</li> </ul> <p>※ 의견제시기간 :8/4(수)~9/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특허청 특허심판원(심판정책과)</a>로 제출</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b>「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b></p> <p>최근 국내 게임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업데이트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돌리는 롤백(rollback)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해당 게임물 이용약관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으로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소비자는 이용약관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되었음</p> <p>그런데 롤백(rollback)의 경우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인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p> <p>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같은 사유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7항·제8항, 제23조의2, 제43조제3호 및 제45조제3항 제1호의2 신설)</p>	2021-07-30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b>「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영의원 등 10인)」</b></p> <p>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과거 기반기술인 인터넷처럼 경제 및 사회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위해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 및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임.</p> <p>이처럼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도 미비한 상황임.</p>	2021-08-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아직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블록체인 기술의 촉진 및 산업 기반의 조성을 통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조)</li> <li>② 국가는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li> <li>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li> <li>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동향 및 수요 조사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li> <li>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등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li> <li>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 (안 제9조 및 제10조)</li> <li>⑦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li> <li>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거래 현황 분석과 평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6조)</li> </ol>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p>• <b>「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b></p> <p>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p> <p>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분해기술의 보급·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p>	2021-08-03
보건복지 위원회	<p>• <b>「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p> <p>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p> <p>이에 영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등)</p>	2021-07-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p>• 「<u>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u>」</p> <p>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 한도가 2021.7.1.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음</p> <p>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렵고,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산업 도태로 이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음</p> <p>이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허용되는 산업(현행은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에 허용)에 연구개발업(IT업종)을 추가하여 IT업종의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p>	2021-07-30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8/13(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51호 발간	
국회도서관	8/1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8호 발간 - 호명:글로벌기업 과세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8/10(화)	「현안, 외국에선?」 제17호 발간 - 일본의 후기고령자 의료비 제도:현역 세대를 배려한 재검토	
	8/12(목)	「국외 현안리포트」 - 주목받는 중국의 스마트 농업	
	8/13(금) 11:30	제15차 「밥 대신 지식강좌」 실시 - 메타버스와 콘텐츠 산업의 미래	온라인
예산정책처	8/13(금)	「NABO Focus」 제35호 발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입법조사처	8/10(화) 14:00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 세미나 개최	ZOOM
	8/13(금)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 방향	세미나 1실
	8/13(금)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가상자산 강제집행 간담회	세미나 1실
미래연구원	8/12(목)	「국제전략 Foresight」 제3호 발간 - 국제질서 리더십 변화의 장주기와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기술혁신’과 ‘기술동맹’ 경쟁을 중심으로	

## [별첨1] 제390회국회(8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외통위	8/12(목) 14:00	전체회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
문체위	8/10(화) 14:00	전체회의	법안의결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10(화) 10:00	경기도, 플랫폼 공정경제 국회토론회	강득구 의원실, 경기도	글래드호텔 볼룸A홀
8/10(화) 14:00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	이원욱, 윤관석, 박성중 의원실 외	ZOOM
8/11(수) 14:00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김상희 의원실, 국회 K-뷰티포럼	중앙보훈 회관 1층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